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요구서

【지적사항 목록】

연번	제목	처분요구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1	개인정보 관리 및 확인 소홀	부서경고	-	-

붙임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부. 끝.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 개인정보 관리 및 확인 소홀 ----- 1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개인정보 관리 및 확인 소홀
[부 서 명] ○○○○○○○○○○
[행정상 조치] 부서경고
[신분상 조치] -
[지 적 내 용]

1. 업무 개요

(재)대전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임직원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지침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2. 관련 법령(판단 기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지침」 제3조 제4호에 따르면 “부서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라 함은 법인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이용·제공하는 취급 부서의 장을 말하며, 제5호에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라 함은 부서별책임자를 보좌하여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며 개인정보취급자를 관리·감독 하는 자를 말하며, 제6호의 “개인정보 보호취급자”라 함은 법인 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대전테크노파크 내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하고, 정규직 이외의 임시직, 계약직, 외부업체 직원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위하여 출력 및 복사한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완료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에서 지난 2026년 ○월 ○○일자로 ○-○○○
○○ ○○○○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신청기업 미달로 2026년
○월 ○○일 추가모집공고 게시후 대전테크노파크에서 대전광역시와 정부자금
을 받고 과제 수행한 ○○○분야 지원기업에게 1회 홍보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S)내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업정보와 함께 사업
참여율 제고를 높이기 위해 ○○○○○○○○○에서 별도로 보관해 있던 기존
지원리스트를 활용하여 메일을 발송하였음.

이로 인하여, 2025년 ○월 ○○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었던
기업의 정보가 이미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S)내에서는 삭제되었기에 해당시스
템을 활용하여 메일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파기하지 않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메일을 발송함에 따라 2026년 ○월 ○○일 국민신문고로 대전
테크노파크 개인정보 무단유출 및 반복적인 이메일 발신에 대한 법적 대응 및
정제요구가 민원으로 요구되었다.

[확인자 의견]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조치할 사항]

앞으로 ○○○○○○○○○은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안
내하거나 홍보할 경우, 재단의 사업정보관리시스템(PMS) 내에서 최신화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부서나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활용기
간이 지나면 파기하시고,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서경고)